

##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기관부여<br>동의양식번호 | 사당2동 제4호<br>(사당동 44-179번지 일대) |
| 번호부여일자           | 2026.7.8.                     |
| 확인(인)            | 도시정비과장 (인)                    |

### 1. 소유자 인적사항

|        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------|--|
| 성명           |  | 생년월일 |  |
| 주민등록상<br>현주소 |  | 전화번호 |  |

#### ※ 소유권 현황

| 권리<br>내역 | 토지  | 소재지 (공유여부) | 면적(m <sup>2</sup> 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(계 필지)     | (계 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소재지 (허가유무) | 동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\*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

#### ※ 주의사항

-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
-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(동의를 받는 자)에게만 동의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
### 2. 구역개요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치<br>(요청 구역) | 사당동 44-179번지 일대 | 구역면적 | 20,604.0m <sup>2</sup>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 3. 동의내용

가.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함  
나.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습니다.

-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

※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

| 의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필로 동의 기재<br><①, ② 중 한 곳만<br>표기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추진위원회<br>구성                | ※동의 서명 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<br><b>추진위원회 구성</b> 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조합직접설립<br>(추진위원회<br>구성 생략) | ※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<br><b>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</b> 하고 공공지원으로<br>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<br>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<br>※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<br>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, 추가 조사 등을<br>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(충족)될 경우<br>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<br>※정비구역 지정 이후 <b>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</b> |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**관련 인·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** 동의를 철회하지 아  
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

※ (예시)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, 입안 요청에  
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

3.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 
따라 **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**하다는 사항

-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  
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 
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  
으로 발송하여야 함 (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 
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)
-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 
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

상기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 
입안 요청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(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)에 대해 동의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동의자 :            *자필서명*            (지장날인)

※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(서명)하고,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(인감, 기타 인장은 불인정)

**동작구청장 귀하**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서류 |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.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,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,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>를 받고 있습니다.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(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)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: 동작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주민 협의·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
\* [문의전화] (동작구청 도시정비과) 02-820-1969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비구역 지정까지 [단,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]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
  -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

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 예 )

성 명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■ 소유권 현황

| 권리<br>내역 | 토 지 | 소 재 지 (공유여부) | 면 적(m <sup>2</sup> 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| (계 필지)       | (계 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건축물 | 소 재 지 (허가유무) | 동 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( 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(위임자)는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」 관련 신청구역의 범위(구역계)를 확인하였으며, \_\_\_\_\_을(를)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| 소유물건             | 연번 | 성명<br>(자필서명) | 주민등록번호<br>(앞 6자리) | 전화번호 | 지장날인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대표소유자<br>(선임수락자) | -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위임자<br>(동의자)     | 1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2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3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4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| 5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※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,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